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금 용도에 해외영상물의 국내촬영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추가 〉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57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기금 용도에 해외영상물의 국내촬영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추가(안 제25조제1항제12호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재원의원 외 10인

나. 발 의 일 : 2026. 1. 22.

다. 회 부 일 : 2026. 1.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발전기금의 사용처로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국제교류, 소형 및 단편영화 제작 지원, 영화산업 종사자 복지 향상 등 국내 영화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그런데 글로벌 영화산업 환경에서 해외 영화 제작사의 국내 로케이션 촬영은 단순한 외화 유치뿐 아니라 국내 영화산업 인프라 확대, 전문인력 양성,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한국 영화 및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영화산업 인프라의 질적 향상과 청년 인력 양성을 도모하며 국제 문화 교류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제12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기금 용도에 해외영상물의 국내촬영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 화를 위한 사업 지원 추가(안 제25조제1항제12호 신설)

개정안은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1항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 11. (생략) <u><신설></u> 12. (생략) ② (생략)	제25조(기금의 용도) ①----- ----- -----. 1. ~ 11. (현행과 같음) 12. <u>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u>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3조¹⁾에 따라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①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있으며, 제25조²⁾에서는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등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제25조제1항제3호는 기금을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금사업으로 ‘영화영상 로케이션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외국 영상물의 국내 로케이션 진행 비용의 20~25% 범위에서 지원하여 왔으며, 2026년부터는 ‘영화 국제공동제작 시범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임.³⁾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2.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3.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4. 소형영화·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4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의 지원

5.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 지원

5의2.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5의3.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위한 사업 지원

6.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사업 지원

6의2. 영화 관련 교육·연수 등과 관련된 사업 지원

7. 예술영화·독립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의2.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

8의3.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

9. 비디오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사업 지원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10의2. 남북 간 영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1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2. 그 밖에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지원

② 제1항제12호의 사업에 집행될 수 있는 기금의 액수는 연간 기금 집행 액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은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을 명시하여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보다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제작사 유치 경쟁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3) 문화체육관광부 관련사업 추진 현황

○ 영화영상 로케이션 지원 사업 ('26년 사업 종료)

(단위: 백만원)

	예산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3년	324	영화진흥위원회	○ 외국영상물의 국내 로케이션 진행 비용의 20~25% 범위내 현금 지원 - 영화 1편, TV시리즈 1편 지원
'24년	1,024	영화진흥위원회	○ 국제공동제작영화 및 외국영상물의 국내 로케이션 진행 비용의 20~25% 범위내 현금 지원 - 공동제작 영화 1편, TV시리즈 3편 지원
'25년	896	영화진흥위원회	○ 국제공동제작영화 및 외국영상물의 국내 로케이션 진행 비용의 25% 범위내 현금 지원 - 공동제작 영화 3편, TV영상물 시리즈 1편 지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영화 국제공동제작 시범사업('26년 신규 추진)

(단위: 백만원)

	예산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6년	3,000	영화진흥위원회	○ 국내 영화제작업자가 제작하는 국제공동제작영화에 대해 최대 5억원 이내에서 순제작비의 50%까지 지원 - 영화 6편 제작 지원 예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 의 처
02)6788-5376